

대구중구 가족센터

2025년 2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대구중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며, 25년 하반기부터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I 직무내용 및 급여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모집인원	0명
직무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근무장소: 중구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직무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종일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시간제(일반형)<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보호자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 등·하원,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단, 만 36개월 이하 영아는 종일제 업무 병행)-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수행		
급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시급: 10,590원 ※ 2025년 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수 추가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제공 시 가산수당(시급) 추가 지급법정제수당<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제수당 지급 <p>※ 기관에서 연계·통보되지 않은 돌봄 활동 시 활동수당 미지급</p>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p>지원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자격 기준 해당자(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5년도 양성교육 이수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2. 아이돌보미로서 <u>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7시~10시, 16시~21시 활동 가능자 - 중구 전역 활동 가능자 ※ 중구 거주자 우대 - 영아 돌봄 가능자 3. 채용 후 바로 활동 가능한 자 4. 아이를 좋아하는 신체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활동 희망자 5. 컴퓨터 및 모바일앱 사용 가능자
<p>제한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치가 불가능한 자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아이돌보미 결격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div> 2. 타 직종 종사 또는 개인 활동으로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한 자

Ⅲ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일정	모집일정	
	서류접수	
	7. 8.(화) ~ 7. 22.(화)	
	서류심사 및 발표	
	7. 23.(수)	
	인·적성검사	
	7. 24~7. 25 중 예정	
	면접심사	
	7. 25~7. 29 중 예정	
	합격자 발표	
7. 30.(수) 중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 (첨부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1부 (첨부양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신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격 및 경력 인정 불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및 제출		
제출방법	1. 방문 또는 우편제출 - (41978) 대구 중구 남산로 53-1, 2층 중구가족센터 ☎ 053)431-1238 - 접수시간: 평일 9:00~18:00	
	※ 제출 시 유의사항 - 방문 접수처(센터)에서 서류 출력 및 작성 절대 불가 - 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IV 지원자 유의사항

1.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본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2.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채용 이외에 응시자가 탈락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 서류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4.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5.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 전원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더라도 임용절차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5. 7. 7.

대구중구가족센터장